담당	책임자	RM	영업점장

수입신용장 재개설 및 중계에 관한 약정서

-	·입신용상 새개설 의뢰욘앵(갑)
	주 소:
	은 행명 :
	÷입신용장 재개설 은행(을)
	주 소:
	은 행명 :
	당기 당사자간에 수입신용장 재개설 및 중계를 함에 있어 따로 제출한 외국환거래약정서 외에 아래 사항에 상호 합의하고
(は무 취급에 협조하기로 한다.

아

래

1. 취급 신용장 내용(개별거래시에만 기재)

가. 개설일자:

나. 개설 의뢰인:

다. 개설금액:

라. 신용장 번호:

2. 신용장 재개설에 관한 사항

- 가. 재개설에 따른 "갑"의 지급보증은 "갑"이 신용장개설 신청서("갑"양식)하단에 이미 "욜"에게 제출한 인감신고서상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동 지급보증은 신용장의 결제기일 만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.
- 나. "을"은 운송서류 원본이 도착하는 대로 "갑"에게 신속히 이를 송부한다.
- 다. "욜"은 신용장 결제기일을 "갑"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
- 라. 신용장 결제대전의 지급은 개설의뢰인이 "갑"을 경유하여 혹은 직접 "을"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"을"은 결제 후 이를 "갑"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 개설의뢰인이 "욜"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"욜"은 "갑"이 통보한 결제일에 "갑"의 계정욜 차기하여 결제할 수 있다.





3. 수수료, 수익 및 수입보중금에 관한 사항

- 가. "갑"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징수한 개설수수료(기간수수료 포함)의 50%와 우편, 전신료 실비를 "욜"에게 이체한다.
- 나. 신용장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매매익은 매매기준율과 "을"이 정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과의 차액으로 하며 이를 각각 반분한다.
- 다. "갑"이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징수한 수입보중금은 "갑"과 "욜"이 반분하여 적립한다.
- 라. "갑"은 결제환가료의 7/10이상을 "을" 앞으로 이체한다.
- 마. 본 건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수수료는 개설의뢰인이 "욜"에게 직접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"갑"은 동 수수료의 납입을 보장한다.

4. 약정의 효력

본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음 가, 나 중 해당 조항에 의한다.

가. 개별약정인 경우 : 본 약정은 상기1에 기재된 신용장거래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
나. 포괄약정인 경우:

- ① 본 약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 만료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②항의 통보가 없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한다.
- ② 위 약정 기간내에 본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의 효력은 그 통보가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.

5. 기 타

본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간 관례에 따른다.

6. 합의 관할

이 약정서에 관하여 "갑" "욜" 간에 소송이 필요한 경우, 법이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르고 법이 정함이 없는 때에는 "욜"의 본점, 영업점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20 년 월 일

갑: (인)

을: (인)



